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목 차>

1. 시설개선 명령대상 어린이활동공간 추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환경부	작 성 자	이름	남경임
	담당부서 (과)	환경보건정책과		직급	환경주사
	국장	황계영		연락처	044-201-6754
	과장	김지영		이메일	econki@mail.go.kr

2024. 06. 13. 작성

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시설개선 명령대상 어린이활동공간 추가																				
	2.규제조문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3.위임법령	환경보건법 제23조제5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어린이 이용시설 중 환경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시설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성 및 개선 조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체육관 786개소 37%가 유해 중금속 기준치 부적합(경향신문 보도, ‘233.1.27.)] － 이에,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를 개정하여 초등학교의 체육관과 지역아동센터를 ‘어린이활동공간’으로 관리하고자 하며, 시장·군수·구청장과 교육감이 초등학교의 체육관과 지역아동센터 각각의 시설 관리자(또는 소유자)에게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제11조에 그 근거를 마련 ○ (정부개입 필요성)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고 활동하는 어린이활동공간을 환경안전기준에 맞게 적정 관리하기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와 소유자에게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명령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관리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7.규제내용	○ 시장·군수·구청장 및 교육감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지역아동센터 및 초등학교 관리자(또는 소유자)에게 시설을 개선하거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관리자나 소유자는 명령을 이행,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자) 초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관련기관) 초등학교 감독기관인 교육감, 지역아동센터의 감독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 ○ (기타 이해관계자) 초등학생 어린이, 학부모 등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체육관을 설치한 초등학교</td><td>전국 약 4,000개소</td></tr><tr><td>피규제자</td><td>지역아동센터</td><td>전국 약 4,000개소</td></tr><tr><td>관련기관</td><td>초등학교 감독기관인 시도 교육청</td><td>17개</td></tr><tr><td>관련기관</td><td>지역아동센터 감독기관 시장군수구청장</td><td>226개</td></tr><tr><td>이해관계자</td><td>어린이, 학부모</td><td></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체육관을 설치한 초등학교	전국 약 4,000개소	피규제자	지역아동센터	전국 약 4,000개소	관련기관	초등학교 감독기관인 시도 교육청	17개	관련기관	지역아동센터 감독기관 시장군수구청장	226개	이해관계자	어린이, 학부모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체육관을 설치한 초등학교	전국 약 4,000개소																				
피규제자	지역아동센터	전국 약 4,000개소																				
관련기관	초등학교 감독기관인 시도 교육청	17개																				
관련기관	지역아동센터 감독기관 시장군수구청장	226개																				
이해관계자	어린이, 학부모																					
9.규제목표	○ 초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																					

		는 공간을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하여 환경유해인자 배출을 저감시킴으로서 어린이가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o 초등학교(체육관), 지역아동센터(보육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감독기관을 지정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 개선 명령 등 조치함으로서 환경성질환 감소 등 어린이 건강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어린이 이용시설 건강 위해성에 대한 불안감·불신 등을 해소할 수 있으므로 사회갈등 감소 등 효과가 있으므로 비용 대비 편익이 큼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 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시설의 개선명령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별로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개선하거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개선명령서에 개선명령 상세내용을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시설의 개선명령 등) ① -----
1. 시장·군수·구청장: 영 제1조의2 제1호(「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제외한다),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시설	1.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단위 체중 당 대사량이 많고, 면역체계가 불완전하여 유해화학물질에 노출 시 성인에 비해 더 큰 피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성인보다 강화된 환경안전관리 필요
 - 202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전체 환경성 질환자 중 0~9세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토피 피부염에서 약 30%,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에서 약 20%로 나타남
- 환경보건법에서는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을 “어린이활동공간”으로 지정하고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함으로서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 관리
 -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의 교실 등은 이미 어린이활동공간으로 지정되어 확인검사 등 실시 중
- * 도료·마감재·바닥재의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로뮴 등) 및 프탈레이트류 함량, 실내공기질(폼알데하이드·총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 등 관리
-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시설 중 추가로 관리가 필요한 초등학교의 체육관 및 지역아동센터의 집단보육실을 어린이활동공간에 포함시켜 환경안전관리에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명령하는 등 정부가 어린이 건강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의 교실 등은 환경보건법에 따라 이미 어린이활동공간으로 지정되어 환경안전관리를 준수하고 있음
- 이에,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 중 초등학교의 체육관과 지역아동센터의 집단보육실에 대해서도 환경안전관리가 필요하며, 교육감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초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에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명령 등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초등학교 소유자 또는 관리자	- 교육부 업무 협의(세종, '24.3.11, 6.20.)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 안전관리제도 설명회(3회, '24.2, 서울, 부산, 광주)	- 초등·특수학교 교실·도서관에 대한 개선 조치가 시급하므로 체육관까지 개선 조치 하기에 예산, 역량 등 부족	-환경부에서 '21년부터 환경안전진단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계속 지원을 위해 예산당국과 협의 중 -시설개선 예산 확보를 위해 유예기간(5년) 설정
지역아동센터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지역아동센터연합회 등 관계기관 업무 협의(서울, 24.1.31.) - 복지부 업무 협의(세종, '24.3.14.) - 지역아동센터 관계기관 간담회(서울, '24.3.21.)	- 즉시 법 이행 불가능 - 환경안전진단 및 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 어려움	- 법 시행 유예기간을 두어 법 시행 전까지 진단 및 시설 개선 등을 지원 할 계획임

3. 규제목표

- 어린이 주요 이용시설인 초등학교 체육관과 지역아동센터 집단지도실을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도록 교육감과 지자체를 각각의 감독기관으로 정하고, 시설개선 등이 이행되는지 관리하도록 함으로서 어린이가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는 어린이 이용시설로서 각 시설에서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인 체육관과 집단보육실을 어린이활동공간으로 한정하여 지정함으로서 그렇지 않은 공간이 불필요하게 어린이활동공간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하였으므로 규제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정되었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기술기준(기술규정)이나 시험·검사·인증 등과 관련된 개정 사항이 아니므로 기술규제 영향평가 불필요

- 경쟁영향평가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및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없으므로 경쟁영향평가 불필요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므로
중기영향평가 불필요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환경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④ 대상 업종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시장 진입 또는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가 아니며, 시장 기능에 개입하는 규제가 아니므로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존속 필요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규제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지 않음
유연한 분류 체계		개념이나 범위를 유연하게 분류하지 않음
네거티브 리스트		네거티브 리스트에 해당하지 않음
사후 평가관리		사후 평가·관리를 도입하지 않음
규제 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 적용 대상 아님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미국) '95년 어린이 위해성 평가 정책 발표 및 '97년 어린이 보호 행정 명령 등을 통해 어린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위해성을 평가하고 이를 모든 연방정부의 활동(기준 설정 등)에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19년에는 어린이의 건강과 긍정적 학습 환경을 촉진하기 위하여 1978년 이전의 주택, 보육시설, 유치원 등 아동시설에 납 관리 기준을 강화한 어린이 건강보호 행동계획을 발표함.
- (유럽) '04년 52개국 장관이 모인 제4차 유럽 환경보건 장관회의에서 국제회의 최초로 어린이 환경보건에 관한 의제를 논의하고 어린이 환경 보건 이행계획을 제안함. '14년에는 건강한 학교 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실내공기질 개선 지침, 노출 관리 지침 등을 제시함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미국, 유럽	일치	

○ 타법사례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교육부령)」 제3조(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에서 학교의 장은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기준(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학교시설(체육관 포함)을 유지·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 대상 시설에 체육관을 포함하고 있음. 즉, 체육관을 관리 대상 시설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또한,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기준(시행규칙 별표2)」에서 환경보건법에 따른 어린이활동 공간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피규제자인 초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소유(관리)자가 어린이 건강 보호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 환경안전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므로 규제 준수하기게 큰 무리가 없음
 - ※ 교육청 및 지역아동센터 설명회 및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 모두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음
- 또한, 개정법령(안)에 적용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규제 적용 시점 전까지 환경부가 규제대상 시설(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의 환경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시설개선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등 피규제자 지원대책을 추진할 계획임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규제 관리·감독기관인 지자체가 이미 유사 시설(초등학교 교실,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 경험이 있으며 제도 집행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므로 행정적으로 집행하는데 문제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 「환경보건법」 제20조 제2항(국가 등의 지원)에 따라 환경부는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관리)자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연간 평균 약 5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관리 중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 발표('24.2.7., 사회관계장관회의)
 - 어린이 이용시설 중 환경안전진단 결과를 고려하여 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법정시설로 포함(「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 한다는 계획을 발표
- 지역아동센터 관계기관 면담('24.1.31.) 및 환경안전관리제도 설명회('24.3.21.)
 - 복지부,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시도지원단 등 대상으로 환경안전관리제도 도입 필요성 설명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해 논의
- 교육청, 지자체 등 대상으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제도 설명회 개최('24.2월 3회)
 -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어린이활동공간 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제도 설명 및 개선보완사항 논의 등 추진
- 교육부 협의('24.3. 6.) 및 시도교육청 회의('24.7.) 등 추진

2. 향후 평가계획

- 규제대상 시설(초등학교 실내체육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환경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설개선 등 추진하여 환경유해인자 저감실적 평가(매년)

3. 종합결론

- 환경유해인자에 민감한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 관리 필요
 - 현재 초등학교의 체육관 및 지역아동센터는 환경보건법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으나, 어린이 건강권 강화를 위하여 법정시설로 관리 필요
- 이에,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를 개정하여 초등학교의 체육관과 지역아동센터를 '어린이활동공간'으로 관리하고자, 시장·군

수·구청장과 교육감이 초등학교의 체육관과 지역아동센터 각각의 시설 관리자(또는 소유자)에게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 환경안전 검사를 통해 환경유해물질 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설 개·보수 등 개선 조치함으로서 건강위해요소를 제거, 환경성질환 감소 등 건강보호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으므로 규제 비용 대비 사회적 편익이 큼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4	2029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시설개선 명령 대상 어린이활동공간 추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12,941.28		12,941.28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12,941.28		12,941.28
기업순비용		12,941.28	연간균등순비용	1,950.36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시설개선 명령 대상 어린이활동공간 추가>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지역아동센터 관리자
활동제목	환경안전관리기준 확인검사 및 시설개선
비용항목	운영
비용	2,168,098,066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개소당 확인검사 비용(원)X 전국 지역아동센터 수 (500,000*44) 개소당 시설개선 비용(원) X 시설개선 대상 지역아동센터 수 (2,000,000*1,600)
근거설명	☐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검사비 ○ (주요내용) 환경보건법 제23조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한 때, 연면적을 33제곱미터 이상 증축한 때, 70제곱미터 이상 수선한 때에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함 ○ 7백만원 = 14개소¹⁾×0.5백만원²⁾/개소 ¹⁾ (연간 신설 지역아동센터 개소수)' 23년 신설한 지역아동센터가 14개소인 점을 고려하여 연평균 지역아동센터 개소수를 14개로 산정함 ²⁾ (지역아동센터 1개소당 확인검사비) 지역아동센터 규모 및 검사항목(중금속, 실내공기질 등) 종류에 따라 검사비가 달라지며, ' 20~' 23년 환경부가 905개소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환경안전진단(확인검사와 검사항목 동일)을 수행할 때 1개소당 평균 0.5백원 소요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수수료)에서와 같이 정밀검사 여부, 시험항목 종류 등에 따라 다양함 ☐ 환경안전관리기준 부적합 시설 개선 비용 ○ (주요내용) 환경보건법 제23조에 따라 지자체, 교육청

	은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 개선 명령할 수 있으며,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 조치하여야 함 ○ 3,200백만원 = 1,600개소¹⁾ × 2백만원²⁾/개소 1) (부적합 시설 개소수) 환경안전기준 부적합률(40%)를 고려할 때, 전국 지역아동센터 4,000개소 중 1,600개소에 대해 시설개선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2) (개소당 시설 개선조치 비용) 환경안전관리기준 부적합요소(도료, 시트지, 바닥재, 실내공기질 등) 및 조치 면적에 따라 개선 비용 다양함. 다만, *20~ '23년 지역아동센터 190개소를 시설개선 하는데 소요된 예산이 개소당 평균 2백만원인 점을 고려하여 단가를 산정함
--	--

(정량)영향집단명	초등학교 체육관 관리자
활동제목	환경안전관리기준 확인검사 및 시설개선
비용항목	운영
비용	10,773,199,888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1개소당 확인검사비 X 신설 초등학교 체육관 수 (500,000*20) 1개소당 시설개선비 X 시설 개선 초등학교 체육관 수 (10,000,000*1,600)
근거설명	□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검사비 ○ (주요내용) 환경보건법 제23조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한 때, 연면적을 33제곱미터 이상 증축한 때, 70제곱미터 이상 수선한 때에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함 ○ 10백만원 = 20개소¹⁾ × 0.5백만원²⁾/개소 1) (연간 신축 초등학교 체육관수) ' 24.9~ '29년 개교 예정 초등학교 수가 97개소임(지방교육재정알리미 홈페이지). 신설되는 초등학교 수를 연간 평균 20개소로 산정함 2) (초등학교 1개소당 검사비) 체육관의 규모 및 검사항

	목(중금속, 실내공기질 등) 종류에 따라 검사비가 달라질 수 있으며, '21~'23년 환경부가 192개소 초등학교 체육관을 환경안전진단(확인검사와 검사항목 동일) 하였을 때, 1개소당 평균 비용 0.5백원이 소요된 점을 고려하여 단가를 산정함 □ 환경안전관리기준 부적합 시설 개선 비용 ○ (주요내용) 환경보건법 제23조에 따라 지자체, 교육청은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 개선 명령할 수 있으며,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 조치하여야 함 ○ 16,000백만원 = 1,600개소¹⁾ × 10백만원²⁾/개소 1) (기준 부적합 체육관 개소수) 환경안전기준 부적합률(40%)를 고려할 때, 전국 지역아동센터 4,000개소 중 1,600개소가 시설개선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2) (체육관 1개소당 개선 비용) 환경안전관리기준 부적합 요소(도료, 시트지, 바닥재, 실내공기질 등) 및 시설개선 면적에 따라 개선 비용이 다양하여 평균 단가로 산정함
--	--

□ 직접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지역아동센터 관리자
활동제목	환경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
편익항목	지역아동센터 환경안전에 대한 신뢰도 제고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환경안전을 진단하고 기준에 부적합 시설은 개선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의 환경보건 수준을 향상시키수 있음. 이는 어린이가 유해물질에 노출될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환경안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제고하는데 효과가 클 것임

(정성)영향집단명	초등학교 체육관 관리자
활동제목	환경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
편익항목	초등학교 체육관 환경안전 신뢰도 제고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는 초등학교 체육관에 대해 환경안전을 진단하고 기준에 부적합 시설은 개선함으로써 초등학교의 환경보건 수준을 향상시키수 있음. 이는 어린이가 유해물질에 노출될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 환경안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제고하는데 효과가 클 것임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량)영향집단명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어린이
활동제목	환경성질환 등 건강피해 저감
편익항목	환경성질환 진료비 저감
편익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지역아동센터 이용 어린이 중 환경성질환자 수 X 어린이 1인 환경성질환 진료비(8,000*50,000))
근거설명	○ (주요내용)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건강영향 피해 저감 ○ 400백만원 = 1,600개소¹⁾ × 25명²⁾ / 개소 × 20%³⁾ × 5만원/1인⁴⁾ 1) (시설 개선 지역아동센터 수) 전국 지역아동센터 4,000개소 중 환경안전관리기준 부적합률* 40%를 고려할 때 기준 부적합하여 시설 개선해야 하는 지역아동센터가 1,600개소일 것으로 예상 * 환경부가 '20~'23년 지역아동센터 905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기준 부적합률이 40%인 것으로 나타남 2) (지역아동센터 이용 어린이수) 지역아동센터 1개소당 어린이 수가 평균 25명* * 출처: 아동권리보장원(구.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홈페이지 3) 국내 유아 5명 중 1명이 환경성질환자 경험 4) (어린이 1인당 환경성질환 진료비) 2015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료 참고

	* 2015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0년~2014년 5년간 건강보험 심사결정 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바에 따르면 알레르기 비염, 천식, 아토피피부염 등 대표적인 환경성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수는 2010년 약 780만 9,000명에서 2014년 820만 5,000명으로 약 339만 6,000명(5.1%) 증가하였고, 총 진료비는 같은 기간 동안 약 3,580억원에서 3,846억원으로 약 265억원(7.4%) 증가함. 1인당 진료비는 약 4만7,000원이고, 1인당 내원일수는 2.8일이었음. 연령별로로는 진료인원 4명 중 1명이 10세 미만의 아동이었다고 한다. 이처럼 환경성질환자수 특히 어린이 환경성질환자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

(정량)영향집단명	초등학교 체육관 이용하는 어린이
활동제목	환경성질환 등 건강피해 저감
편익항목	환경성질환 진료비 저감
편익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초등학교 체육관 이용 어린이 중 환경성질환자 수 X 어린이 1인 환경성질환 진료비()
근거설명	○ (주요내용) 초등학교 체육관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건강영향 피해 저감 ○ 6,880백만원 = 1,600개소¹⁾ × 430명²⁾ / 개소 × 20%³⁾ × 5만원/1인⁴⁾ 1) (시설 개선 지역아동센터 수) 전국 초등학교 체육관 4,000개소 중 환경안전관리기준 부적합률 40%*를 고려할 때, 기준 부적합하여 시설 개선해야 하는 초등학교 수가 1,600개소일 것으로 예상 * 환경부가 '21~'23년 192개소 초등학교 체육관에 대해 환경안전진단한 결과, 환경안전관리기준 부적합률이 약 40%인 것으로 나타남 2) (초등학교 체육관 이용 어린이수) 초등학교 체육관 1개소를 이용하는 어린이 수 평균 430명* * 출처 : 지방교육재정알리미('22년 기준으로 전체 초등학교 수 6,163개소, 초등학생수 2,656,448명)

	3) 국내 유아 5명 중 1명 환경성질환 경험 4) (어린이 1인당 환경성질환 진료비) 2015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료 참고 * 2015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0년~2014년 5년간 건강보험 심사결정 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바에 따르면 알레르기 비염, 천식, 아토피피부염 등 대표적인 환경성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수는 2010년 약 780만 9,000명에서 2014년 820만 5,000명으로 약 339만 6,000명(5.1%) 증가하였고, 총 진료비는 같은 기간 동안 약 3,580억원에서 3,846억원으로 약 265억원(7.4%) 증가함. 1인당 진료비는 약 4만7,000원이고, 1인당 내원일수는 2.8일이었음. 연령별로로는 진료인원 4명 중 1명이 10세 미만의 아동이었다고 한다. 이처럼 환경성질환자수 특히 어린이 환경성질환자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